



04 간접비제도와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연계방안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중심의
연구 간접비 제도로 개선 필요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분야 간접비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구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연구 간접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 간접비 규모가 미미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관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금액의 절대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 규모의 급증은 대학이 수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규모의 증가와 함께 대학의 재정수입구조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결국 교육이 중심이던 대학의 주요 기능이 연구와 성과활용이라는 또 다른 역할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은 새로운 기능을 담당할 조직과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기능들은 각 대학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전담하고,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연구 간접비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교육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함에 따라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제도는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하부시스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국가차원의 주요 사안이 되었고, 이 차원에서 연구 간접비지원제도와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연계 필요성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와 원가계산 기준 방식 혼용

산학협력단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대학의 대외적인 활동과 이에 상응하는 투명한 예산 처리를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동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학협력수수료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증가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한데 그 원천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연구 간접비 수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09년 대학산학협력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연간 조달하는 연구 간접비 수익규모는 2007년 2천530여억 원에서 2009년에는 4천350여억 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되는 연구 간접비는 대학의 연구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연도별 총 연구비 대비 간접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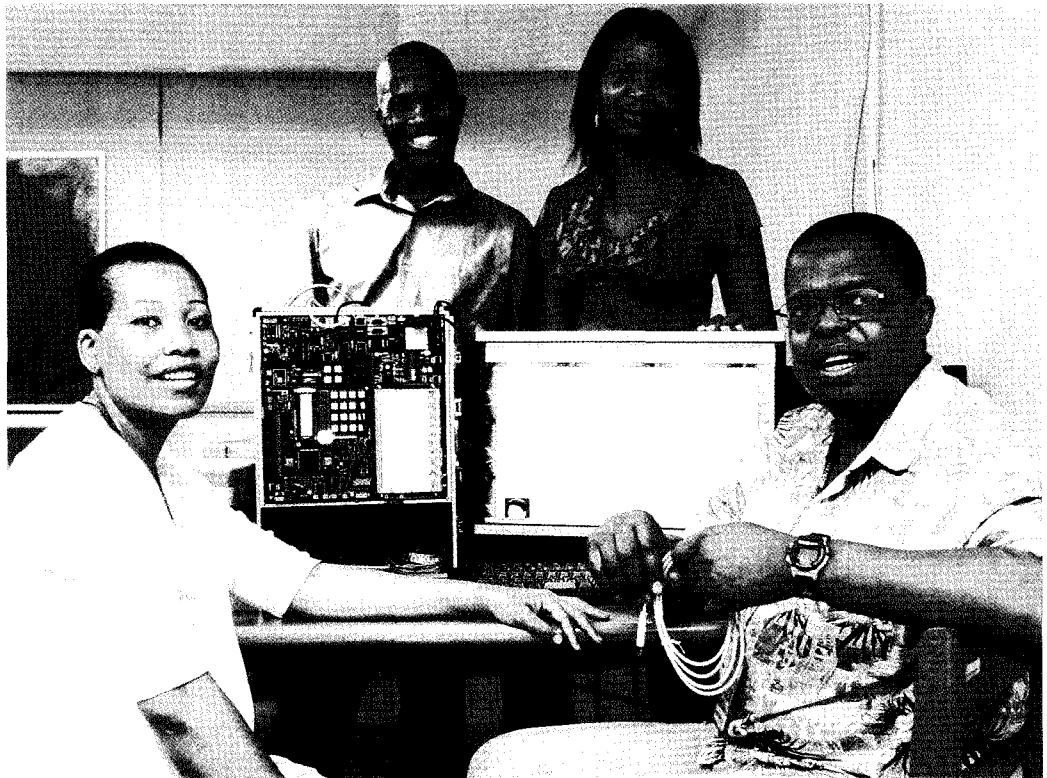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연구비	3,230,561	3,498,559	4,012,871
간접비	253,078	346,078	435,071
총연구비 대비 간접비 비율(%)	7.8%	9.9%	10.8%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 지원방식은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간접비 지급률 결정 방식과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지급률 결정방식이 있다.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간접비 지급률 결정방식은 정률지급방식으로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 도출된 등급별로 간



글 **손승근** 한국연구재단 연구비관리팀장 chung@nrf.re.kr

글쓴이는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후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회계과장, 한국과학재단 에너지환경팀장 등을 지냈다.



▶ 한국대는 11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선발한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4명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IT 연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포토)

접미 지급률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지급률 결정방식은 실간접비 지급방식으로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 B등급 이상인 대학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간접비 실사를 통해 간접비 지급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는 일정한 평가지표를 충족시 킬 경우 모두 A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A등급을 받은 대학은 20%, B등급을 받은 대학은 15%의 간접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등급별 간접비 지급률

등급	A(90점 이상)	B(80~90)	C(80~70)	D(70점 미만)
간접비 지급률	20%	15%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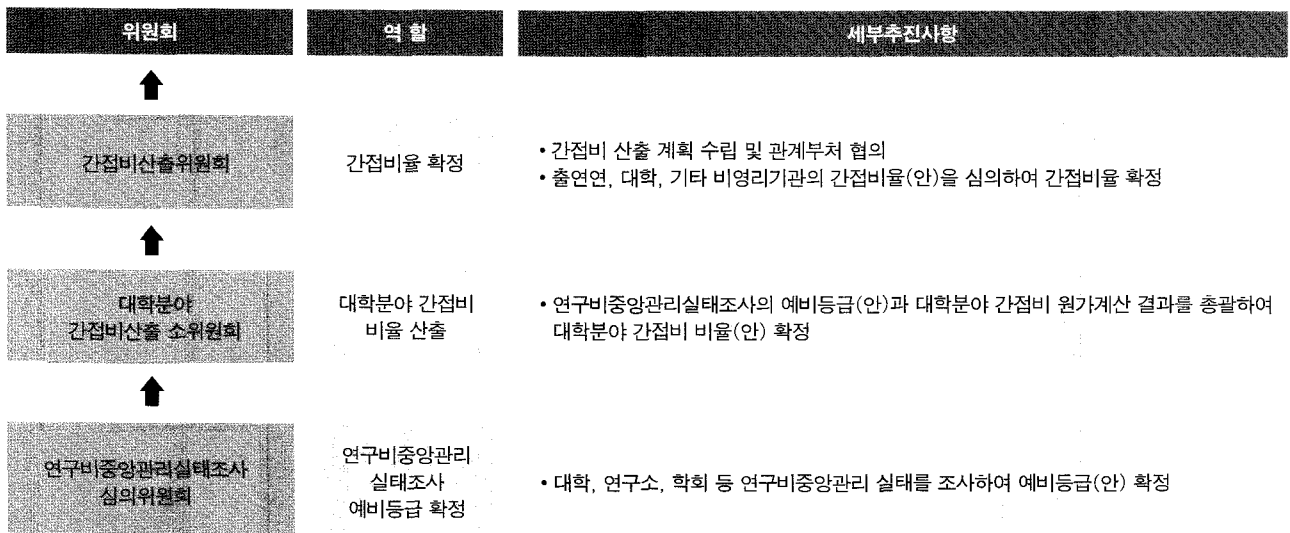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 비율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별 연구 간접비 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학분야 간접비 계상기준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

간접비율 산출의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심의위원회'에서 각 대학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예비등급을 확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는 연구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 B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신청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이 적용되게 되며, 각 대학의 연구 간

접비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실사율을 도출한 후 연도별 상한 지급률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즉, 대학의 연구 간접비율 계상을 위해서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원가계산 기준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기관에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연구자 개개인을 대신하여 연구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집행의 관리주체가 개별 연구책임자가 아니라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 지원제도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전담기구가 공식적인 회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업무를 경감시켜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직접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연구비를 집행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중앙관리로 연구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연구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분야 간접비율 산출절차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적극 활용해야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 지원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간접비제도는 각 대학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는 모든 대학을 A등급으로 유도하고자하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대학분야 연구 간접비 지원제도에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방식 중심의 연구간접비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대학분야 연구간접비 지원제도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가 단지 원가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수



단으로 전락되어 있다. 따라서 기왕에 하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라면 그 결과에 따라 각 등급별 간접비 지급률을 현실화해서 간접비 지급률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의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는 연구비 규모에 관계없이 실태조사 평가지표가 동일하고, 실태조사 미참여 기관과 참여 결과 최하위 기관의 등급이 동일하며, 최근 10년간 실태조사 결과 최고등급기관도 매년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비 규모에 따라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고, 미참여 기관에 대한 연구 간접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기간 실태조사 최고등급 유지기관은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비관리 부실기관의 간접비 관련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연구 간접비 지원제도에서는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감점이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의 등급결정에 반영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간접비율 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속 연구원(직원 포함)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최종 유죄 확정판결인 경우)을 받거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를 받은 경우 유형별로 간접비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기관별 간접비율을 전문적으로 산출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매년 연구간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산출할 때 현장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점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간접비율은 일정기간(3년 정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학 간접비 지급률 상한선 31%로 상향 조정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 투입 규모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연구현장에 투입된 연구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1차적인 통제기능을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통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대학에 최대한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분야 간접비 지급률 상한선을 2010년 27%에서 2011년 31%로 3%p 상향 조정해 고시한 바 있다. 아무튼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접비제도 선진화 방안' 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 간접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그 결과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